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4월 13일

나. 제 출 자 :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4월 13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4월 22일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문 경 원

나.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주민부담률이 정부 지침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조례의 무게 단위 대비 부피 단위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불합리성을 조정하고자 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적정 방법으로 배출하도록 배출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주요내용

- 개별계량 방식 수수료 조정(안 별표 1)
 - kg당 수수료를 10원 상향 조정
-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 조정(안 별표 1)
 - 리터당 가격을 50원으로 조정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배출자의 감량 의무 강조 (안 제10조제2항제1호)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와 합의되었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전 천 수

- 본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주민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단위 수수료를 kg당 60원에서 70원으로 10원 상향조정하고 부피단위 수수료를 리터당 5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상승과 수입대비 처리비용 과다 지출로 인한 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